

감사위원회 규정

2022. 3. 29.



제 1 조 (목 적)

- ① 이 규정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②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 (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 ①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조 (구 성)

-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그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당해 위원 선임을 위한 회의는 연장자인 위원이 주재한다.
- ③ 위원장의 임기는 선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2. 3. 29.>

제 5 조 (소 집)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개최될 수 있다.

제 6 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하여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 7 조 (기능과 권한)

- ①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이사회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이사의 보고 수령
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7. 이사(단, 위원이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회사 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8. 위원과 회사 간 소송에서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 선임 청구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제 8 조 (의무)

- ①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부의 사항)

-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진술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업무·재산 조사
 2. 이사 및 이사가 위임한 자의 보고 수령
 3.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4. 연간 회계감사 계획 및 결과 검토
 5. 회계처리기준 변경의 타당성 검토
 6.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7.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8.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9.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의 선정 및 변경·해임·보수에 대한 결정
 10.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11.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선임
 12.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3.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

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4. 직무수행을 위한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이사회 승인이 요구되는 사안의 경우는 본 호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⑤ 위원회는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제 10 조 (내부감사부서)

회사는 위원회 산하에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아래 각호와 같이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1. 내부감사부서는 감사 업무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내부감사부서 장의 임면 시 회사는 위원회와 사전에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자료제출 요구권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게 위원회 출석, 관련자료의 제출 및/또는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12 조 (감사조직)

① 위원회의 감사조직은 [내부감사부서]로 한다.

- ② 간사조직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 전반을 처리한다.

제 13 조 (의사록)

- ① 간사조직은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4 조 (감사록)

- ① 간사조직은 위원회의 감사에 관한 감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각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15 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2008. 3. 25.)

이 규정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3.)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5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30.)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29.)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